별표1(감점기준표)

[별표 1](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 관련)

감점기준표

1. 일반기준

- 가. 감점 사유에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 나. 감점기준표의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50%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감점할 수 있다. 다만, 감점기준표의 5, 6 및 7호는 제외한다.

2. 감점기준

(단위 : 점)

	단위	기간별 감점기준			
감점사유		1주 이하	2주이상	4주이상	12주
			4주미만	12주미만	이상
1. 허가없이 결석, (의무합숙 시) 외박 허가없이 (희망합숙 시)외박	1일당	100	80	80	80
		20	15	10	10
2. 원내 주류반입 및 음주	1회당	70	70	70	7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10	(100)	(100)	(100)	(100)
3. 공무원 품위손상(고성방가 등)	1회당	70	50	40	3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0)	(100)	(100)	(100)
4. 허가없이 결강, 조퇴, 지참, 외출 (감점의 합계가 제1호의 감점보다 높을 경우 제1호의 감점 적용)	시간당	20	15	10	10
5. 입교등록 지연 (감점의 합계가 제1호의 감점보다 높을 경우 제1호의 감점 적용)	시간당	30	30	30	30
6. 허가받은 결석, (의무합숙 시)외박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결 석의 경우 관련근거서류 미제출)	1일당	28 (42)	21 (31)	14 (21)	10 (15)
7. 허가받은 결강, 조퇴, 지참, 외출,	시간당	4	3	2	1
8. 학습 및 시험 태도 불량	1회당	50	50	50	50
9. 허위보고 (대리서명 등)	1회당	70	70	70	70
10. 각종 학습보고서의 지연 제출	1회당	10	6	4	2
11. 교육자치회 활동 무단불참	1회당	10	6	4	2
12. 숙소동 환경정리 불량	1회당	3	3	3	3
1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1회당	3	3	3	3
14. 당직실을 경유하지 않은 숙소동 음식물 빈입	1회당	5	5	5	5
15. 교육원 재산훼손	1회당	30	30	30	30
16.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사항 위반	1회당	10	10	10	10

※ 기타 적용사항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감점 처리
- 희망합숙일 경우 제2호 및 제3호 위반자는 감점 적용과 함께 숙소동 퇴실조치